

[별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작성단위 : 심사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보안(일반 및 정보)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대외비, 암호자재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비밀취급 인가·해제, 을지연습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 연습, 정보통신망 구성 및 정보, 보안취약사항 점검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징계위원회 회의, 위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1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제1호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심사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공직기강 및 사안 조사결과	제5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개인별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교원소청심사, 중양고충, 소송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청·중양고충사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접수 및 생산된 문서, 결정서 등 공개될 경우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제6호 제7호
	진행 중인 소송·행정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 등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제5호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공통업무에 관한 사항	공표 전 통계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27조의2, 제33조)	제1호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자가 비공개를 요구한 제안의 내용(「국민제안규정」 제7조)	제1호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제5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제6호

<참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